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50호

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'23년 종료 예정인 가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'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'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'23.12.31.에서 '25.12.31.까지로 2년 연장(안 제2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
- E - mail : pp1703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 044-201-3344, 33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